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54 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 우재준 • 이성권 • 김위상

임종득 · 김선교 · 조지연

이종배 · 엄태영 · 이상휘

구자근 · 정동만 · 박정하

진종오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 그 결과 2023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.8% 수준에 그쳐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 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.

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,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함.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. 참고로, 매년 아동의 실종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, 이 중에는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지못한 미해결 사건이 있음.

이에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

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제7조의5로 하고,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4(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)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1세가 된 해에 경찰청장에게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지문 정보 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제1호의2 중 "제7조의4"를 "제7조의5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아동 지문 정보 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아동이 1세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7조의4(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)
	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1
	세가 된 해에 경찰청장에게 아
	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신청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② 지문 정보 등록의 방법 및
	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7조의4(지문등정보의 목적 외	제7조의5(지문등정보의 목적 외
이용제한) (생 략)	이용제한) (현행 제7조의4와 같
	승)
제1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8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<u>제7조의4</u> 를 위반하여 지	1의2. <u>제7조의5</u>
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	
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	
1의3. ~ 4. (생 략)	1의3. ~ 4. (현행과 같음)